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2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5월 27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6.1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김정환 장애인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면적(m ²)
구립강서구 직업재활센터	강서구 허준로 95-9	지하1층, 지상5층	2,308

○ 위탁사무내용

- 장애인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 재활프로그램, 작업 활동 프로그램 실시
- 시설물전체 관리 운영
- 기타 장애인 직업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가 요청 또는 승인한 사업 등

○ 위탁기간: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유찰2회시 수의협약 가능)

○ 소요예산: 연 733,149천원(시비 440,649천원, 구비 292,500천원)

2) 추진일정

- 2021년 7월~ 8월: 민간위탁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1년 9월~10월: 수탁자 적격 심사 및 결과 공고
- 2021년 10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부칙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서선옥)

- 본 동의안은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자립 실현을 위해 2010년 12월에 설립되어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위탁 사무에 대해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운영의 전문성,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등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제2조에 의거 민간 위탁 적정성 심의 제외 대상

-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의 위탁)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수탁체 선정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강서구의회 대표 2명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⑦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